#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933

발의연월일: 2022. 10. 26.

발 의 자: 어기구·김주영·김홍걸

박상혁・박 정・송갑석

신정훈 • 안호영 • 윤재갑

윤준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21.6.15.)되었음.

그런데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 ·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법률 제 호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제1항 중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를 "분쟁에 대하여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우"로, "둔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한다.

제23조의5제1항 중 "위원장"을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마다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사건"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혅 했 아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 |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 회의 설치 등) ① -----회의 설치 등) ① 농약으로 인 -----<u>분</u>쟁에 대하 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 (調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 여 조정(調停) 신청이 있을 경 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 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구성<u>·운영</u> 를 둔다.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정위원회는 <u>위원장</u> 1명을 ① -----분쟁사건(이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 "사건"이라 한다)마다 위원 구성하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_\_제>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는 3년으로 하되, 2회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⑤ · ⑥ (생 략) 제23조의6(위원의 제척・회피・ 제23조의6(위원의 제척・회피・ 기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기피)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u>분쟁사</u>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除斥)된다.

1. ~ 5. (생 략)

② ~ ⑤ (생 략)

 	- <u>사건</u>
 · <u>.</u>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